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아래 지상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이 있어 확인한 바,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있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중구청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 2022.08.05. ~ 2022.08.19.
3. 말소처리 일자 : 2022.08.05.
4.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이○영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토지소유자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지번	층수	연면적	구조	용도		
	입정동 258	지상1층	29.75㎡	목조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중구청	부서명	도심재생과	담당자	유제혁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번호	3396-5774
		전자우편주소	vampr ix@junggu.seoul.kr			팩스번호	3396-8783

5. 유의사항

- 가.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 연 락 처 : 02-3396-5774, 모사전송(FAX) 02-3396-8783